현송세무회계 · 빚 때문에 상속포기를 고민할 때

상속포기 후 보험금 체크리스트

상속포기를 해도, 사망보험금을 받으면
상속세 계산에서는 따로 봐야 합니다.

사망보험금, 상속세에서는 이렇게 봅니다

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

돌아가신 분이 계약자이거나 보험료를 실제로 낸 보험
사망으로 받는 생명보험·손해보험의 보험금

상속재산
으로 봄

상속포기를 한 사람
상속세법에서는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'상속인'에 포함

상속인
으로 봄

상속세를 내는 기준
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 비율로 나눠 냄
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 연대해서 낼 의무

받은 몫
기준

그래도 세금이 꼭 나오는 건 아닙니다

상속재산이 사망보험금 5천만 원뿐인 단순 예시

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
5,000만

−

일괄공제
5억

→

상속세
0원

다만 **보험금이 크거나** 다른 상속재산·10년 안 증여가 있으면, 공제를 넘는 만큼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. 포기 서류를 쓰기 전에 **보험금과 세금을 따로** 계산해 보세요.

현송세무회계
대표세무사 허훈 · 강남역

02-562-0111
hyunsongtax.com 상담 신청

*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호·제3조의2·제8조·제21조 (2025. 10. 1. 시행) 기준 일반 안내입니다. 다른 상속재산·사전증여 및 공제 상황에 따라 실제 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포기 서류 쓰기 전, 꼭 알아둘 것

먼저 볼 것은 보험료를 누가 냈는지

돌아가신 분이 계약자인 보험이면 상속재산으로 봅니다. 계약자가 다른 사람이어도 **돌아가신 분이 실제로 보험료를 냈다면** 마찬가지입니다.

포기했어도 상속세에선 상속인

상속세법의 '상속인'에는 **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포함**됩니다. 보험금을 받았다면 상속세 계산에서 빠지지 않습니다.

세금은 받은 몫만큼 나눠서

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 비율로 나눠 내고, **각자 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** 서로 연대해서 낼 의무가 있습니다.

공제에는 한도가 있습니다

일괄공제 5억 등 상속공제는 한도 안에서만 빼 줍니다. 예를 들어 **앞 순위 상속인이 포기해서 다음 순위 상속인이 받은 재산**은 공제 한도 계산에서 빠집니다.

신고는 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안

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**3%를 공제**받습니다. 돌아가신 분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면 9개월입니다.

현송세무회계

대표세무사 허훈 · 강남역

02-562-0111

hyunsongtax.com 상담 신청

* 근거: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호, 제3조의2 제1항·제3항, 제8조 제1항·제2항, 제21조 제1항, 제24조, 제67조 제1항·제4항, 제69조 제1항 (2025. 10. 1. 시행). 상속포기 절차·보험금 수령 여부는 민법·보험계약에 따라 다르니 따로 확인하세요.

포기 서류 쓰기 전 마지막 점검

우리 집 상황 체크해 보세요

하나라도 **"모르겠다"**면, 보험금과 세금을 따로 계산해 보세요.

- [ ] **보험계약자와 보험료를 낸 사람을 확인했나요?**
  돌아가신 분이면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봄
- [ ] **보험금 받는 사람(수익자)이 누구로 되어 있나요?**
  보험증권·보험회사 안내문에서 확인
- [ ] **보험금 말고 다른 상속재산이 있나요?**
  예금·집·차 등과 합쳐서 계산
- [ ] **돌아가신 분이 10년 안에 준 돈이 있나요?**
  사전증여가 있으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음
- [ ] **상속인 모두가 포기하나요, 일부만 포기하나요?**
  다음 순위 상속인이 받는 재산이 있으면 공제 한도 확인
- [ ] **신고기한을 계산해 봤나요?**
  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 · 기한 안 신고 시 3% 공제

애매한 항목이 있다면

보험증권과 상속재산·빚 내역을 알려주시면, 상속포기 전에 세금을 먼저 계산해 드립니다.
프로필 링크 → 홈페이지 상담 신청

현송세무회계
대표세무사 허훈 · 강남역

02-562-0111
hyunsongtax.com 상담 신청

* 상속세 및 증여세법 (2025. 10. 1. 시행) 기준 일반 안내이며, 개별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